

안전한 일터 핵심 확인사항



1 추락사고 예방

✓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안전모 안전대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을 적절하게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비계	작업발판 구조 및 설치 상태가 적정한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철골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로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지붕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 시 폭이 30cm이상 되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추락방호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개구부 덮개 · 단부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 추락 방호조치를 적절하게 설치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안전통로 확보		통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2 부딪힘사고 예방



✓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출입금지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안전통로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통로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적정한지(75럭스(lux) 이상)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통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시 사전조사 및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등을 지정·배치하여 통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40조)		
기계·기구 위험예방	기계·장비 등의 결함, 작동이상 유무 및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기계·기구·설비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사용 시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취업제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시 자격 등이 있는 자를 작업에 배치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3 끼임사고 예방



✓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92조)		
전원차단	점검, 수리 등의 정비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지한 기계를 임의로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적정하게 받고 사용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93조)		

4 질식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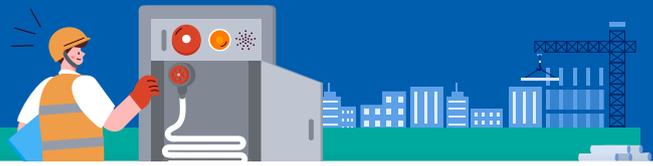
✓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밀폐공간 등 확인	사업장 내 위험한 밀폐공간을 파악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사업주 또는 책임자가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이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환기설비(송풍기 등),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밀폐공간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시를 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환기, 송기마스크 구비 등 조치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환기 및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밀폐공간 작업 시 입·출입 근로자 인원 점검을 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		
	긴급구조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6개월 1회)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감시인 배치 및 교육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작업 전 작업자 또는 감시인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		

5 화재·폭발사고 예방



✓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위험물 취급	위험물을 작업장 외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에 필요한 양만 비치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238조)		
작업장 안전상태	통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인화성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특정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였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		
비상조치	작업장에 비상구가 출입문 외에 1개 이상 설치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8조)		
	화재 등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경보용·설비 기구가 설치되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적합한 소화설비를 비치·사용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MSDS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적정히 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6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점검자:

✓ 점검일자:

✓ 점검장소: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생수 등) 등을 충분히 갖추어 두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냉방장치	폭염작업 시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휴식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주기적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폭염 노출 옥외 장소에서 작업 시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보냉장구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 지급·가동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가동 여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응급조치	폭염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		